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시스템과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목적중심의 청렴시민감사관 활용법-

한 창 희

(사)이케이 청렴사회연구소 소장

CP: 010-5213-7910, bluechadol@naver.com

목 차 (Contents)

1	효과적인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윤리시스템 운영 ----- 3 -청렴 관점 전환과 목적중심의 청렴윤리시스템-
2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이해 ----- 20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제도 운영현황-
3	청렴시민감사관 활용법 ----- 30 -목적중심의 효과성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4	맺음말 ----- 44 -함께 하는 청렴윤리-



1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윤리시스템 운영 필요성”

-청렴에 대한 관점 전환과 목적중심의 청렴윤리시스템 운영-

“청렴, 윤리에 대한 질문들...”

'왜?', '어떻게?', '무엇을?'



Q) 청렴, 윤리, 그게 도대체 뭔데...뭐 달라졌나?

Q) 청렴도? 그래서 그게 뭔데, 기관/담당부서에서나...

Q) 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왜 ? 노력도 평가를 위해?

Q) 우리 기관의 운영 수준은? 기관/직원들은 알고 도움이 되나?

Q) 효과성 있고 체감하는 청렴시민감사관 활용법은?



“청렴민감성(Sensitivity)갖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위한 끊임없는 질문”
-나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Sensitivity 청렴민감성

내가 이 행위를 하면

-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 이해관계자(제3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청렴윤리는?

청렴윤리는

- ✓ 벌새(Humming Bird)와
- ✓ 진열대(Window Dressing)와 같고,
- ✓ 종이조각(Just Paper)에 불과하고
- ✓ 창고 속의 썩은 사과(Rotten Apple in a Corporate Barrel)와 같다.



“효능감”
‘진정성’, ‘효과성’, ‘목적중심’

윤리지향적 반부패·청렴시스템

<윤리지향적 반부패·청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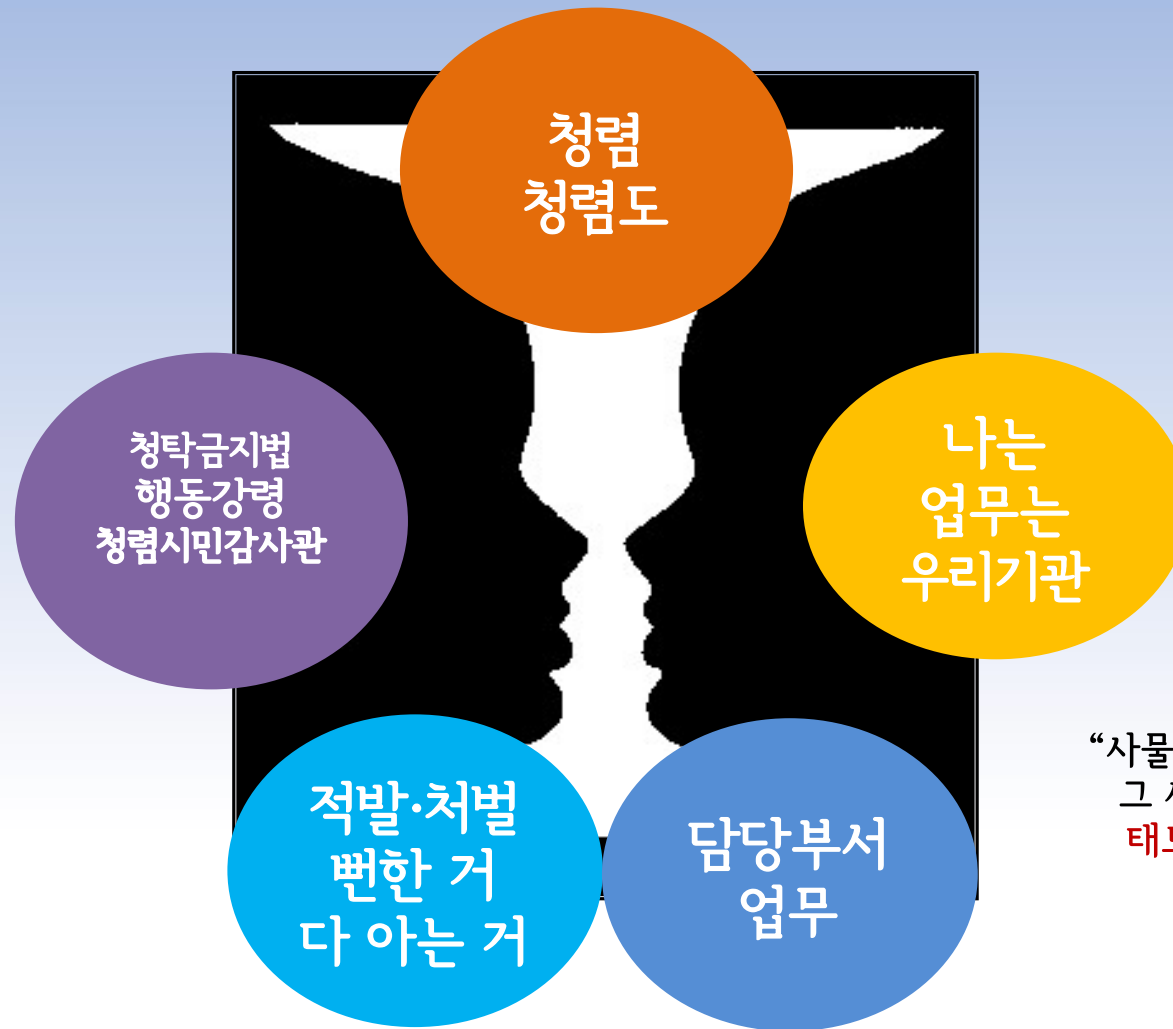


“반부패·청렴윤리시스템은 그 존재로서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특성과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구 분	내 용
CEO	- 최고관리자의 의지는 조직의 청렴윤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 반부패·청렴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 평가하는 역할 - 최고관리(경영)층은 조직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 설정하고, 제시 - 최고관리자 그룹(핵심리더)과 함께 반부패·청렴 의지를 공유하고 노력
Integrity & ethics System	- 문서화된 규정(Code of conduct):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 법령, 행동강령, 윤리실천지침, 실천매뉴얼 등 - 제도화(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청렴윤리전담조직 운영, 행동강령책임관 및 청탁방지담당관 등 운영, 부패행위(공익신고)신고제도 운영, 청렴도평가 및 고위직 위험도 평가 등 - 교육 및 인식창출(Consensus by ethics education): 반부패·청렴 교육프로그램, 청렴 마일리지, 홍보, 청렴윤리의 날 운영 등 청렴윤리 의식을 공감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Culture	- 최고관리자와 구성원이 업무단위에서 실행, 생활화 하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 반부패·청렴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성과척도로서 중요 - 청렴윤리적 조직문화는 모든 조직구성원이 공유된 가치(shared value)로서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고 실행 할 때 본래 목적을 달성하며, 조직문화로 정착됨 - 청렴윤리적 조직문화는 내부 구성원들의 소통 활성화가 중요하며, 상급자(리더)의 노력, 사례 공유, 칭찬과 인정,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가능

⇒ 반부패·청렴의 성공적 추진은 핵심 요소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며 균형적으로 추진 되어야 함

觀點·Viewpoint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청렴에 대한 관점

법령에 규정된 '청렴'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무사안일
태도·행동

'게으름 病'(업무 방치/지연처리)

'미루기 病'(업무전가, 적당주의)

책임행정
불이행

'무작정 따르기 病'(선례답습)

'핑계대기 病'(법규빙자)

'청렴수준' 개념(청렴도 평가)

- '청렴수준'의 개념적 정의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를 처리한 정도'

청렴

clean

공직자의 자세
윤리 개념

반부패

anti-corruption

공직자의 의무
법적 개념

- 투명성과 책임성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자신(기관)의 역할을 인식하고, 역할·책임을 잘 하는 것”
“책임성(Accountability)”

부패의 개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 행위”

-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 통한 사익도모 행위
- 예산집행·계약과정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 재정환수법 등 위반행위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부패 범죄”

-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 직무 관련 그 지위·권한 남용 범죄
-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 관련 범죄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오·남용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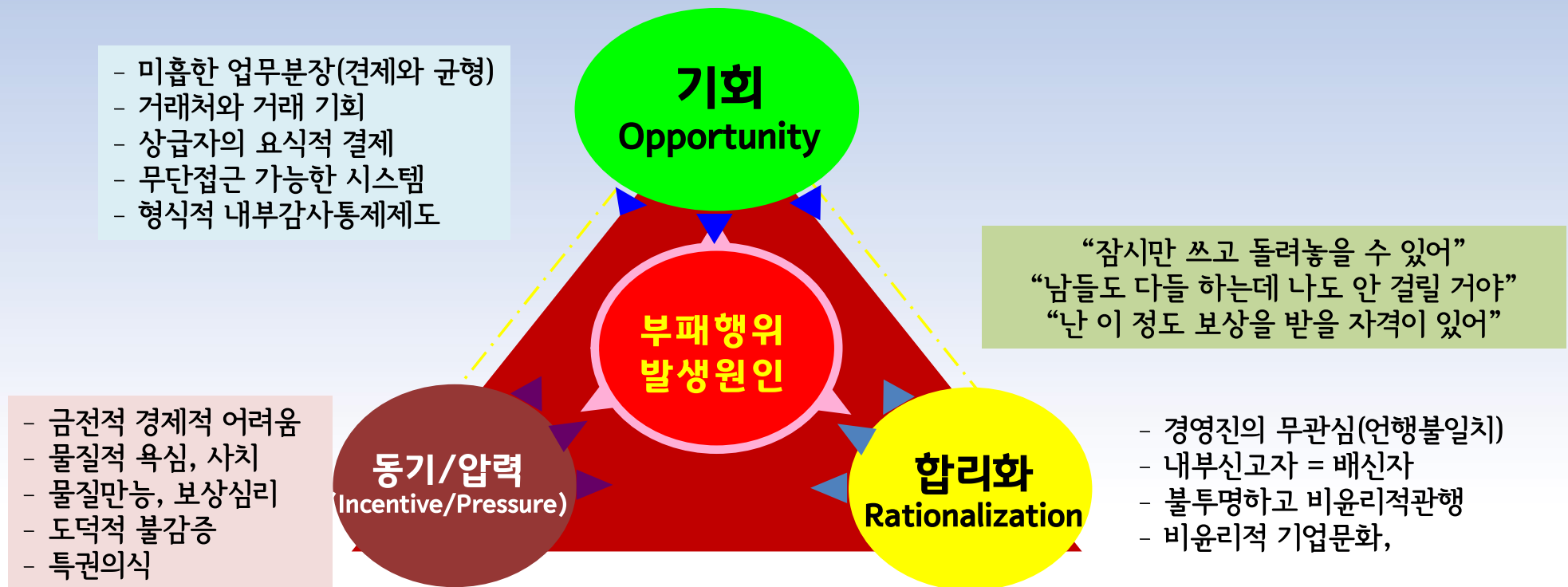
“The mis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benefit”

“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부패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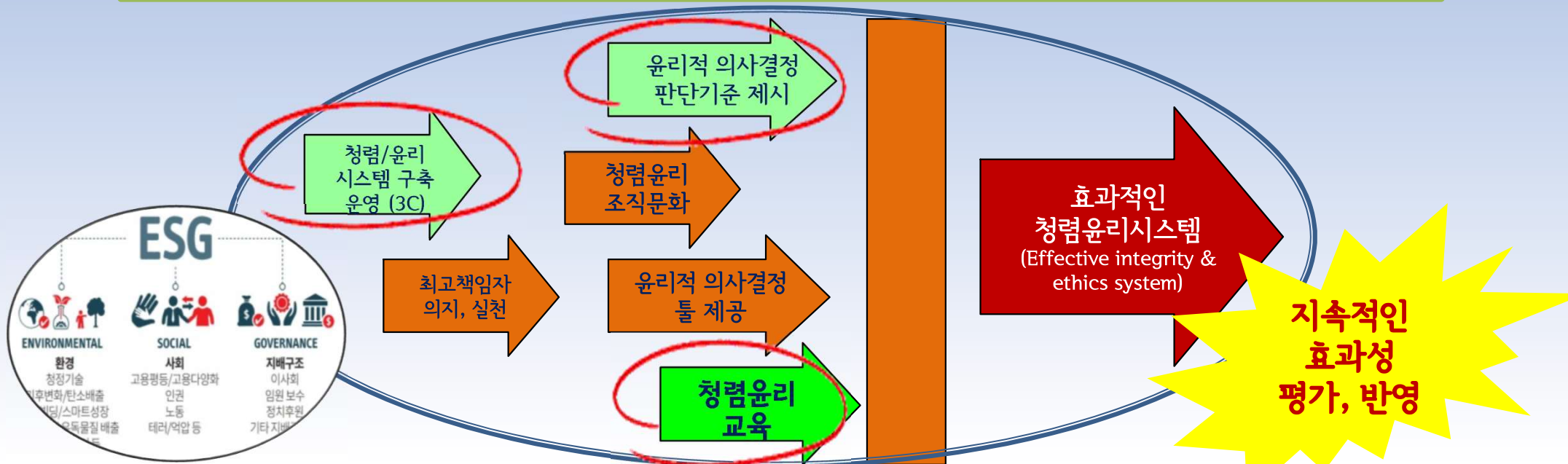
'부정 삼각형이론(Fraud Triangle Theory)'

- 미국 범죄사회학자 도널드 크래시(Donald Cressy)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윤리시스템 구축운영”

“기관(회사)은 **효과적인 기관특성 청렴윤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구성원의 청렴하고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뒷받침 해 주고,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우리의 청렴수준(CPI)”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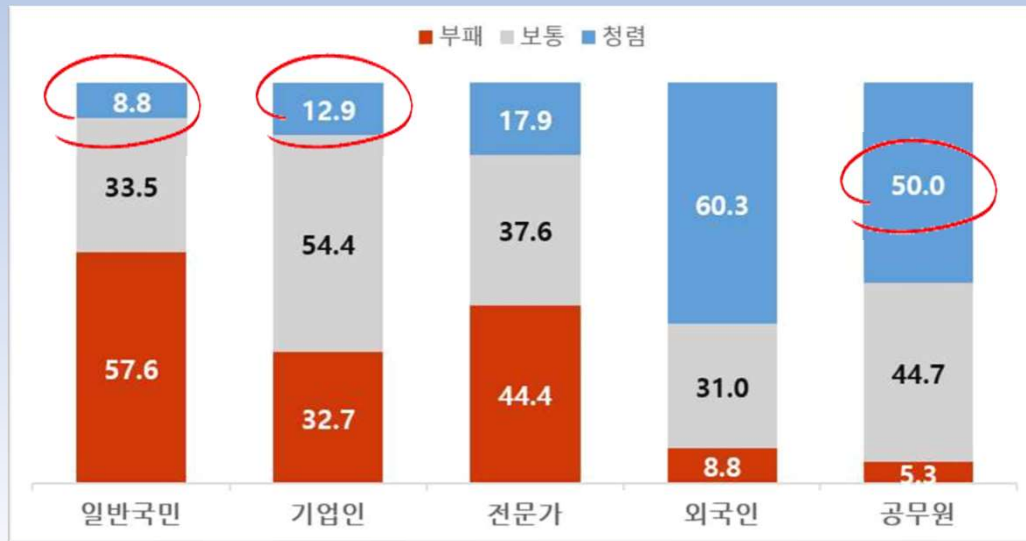


- 70점 이상 :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 한국(63점)이 있는 50·60점대는 ‘절대적인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
- “CPI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도 높다

공공분야 및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청렴윤리 실천을 통해 국가전반의 청렴수준 제고 필요(20위권)

우리사회는 청렴합니까?

“청렴하다(8.8%)/(12.9%)” vs “부패했다(57.6%)/(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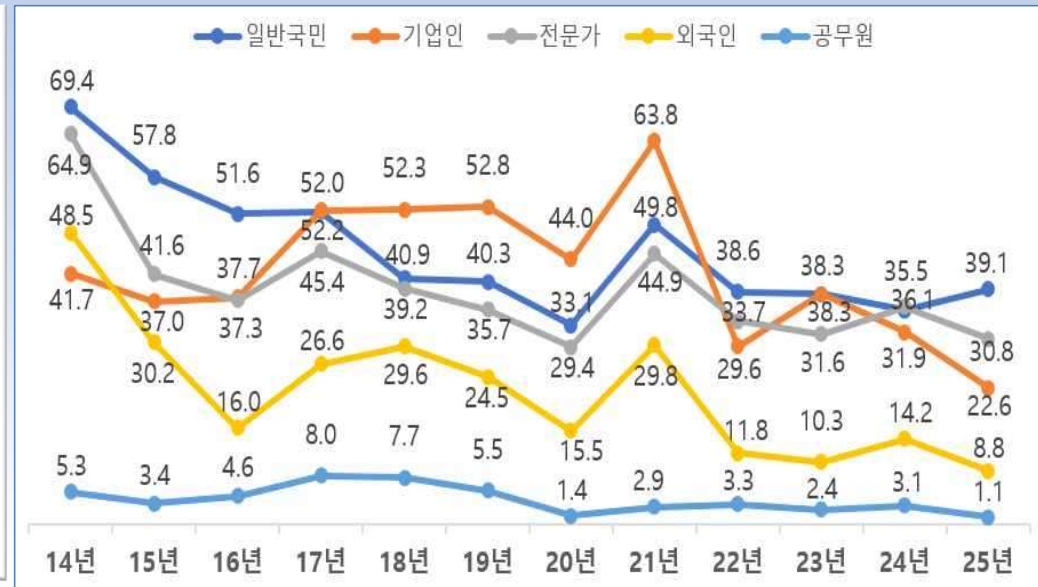
-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
 - 일반국민(50.3%), 기업인(63.8%), 전문가(57.3%), 공직자(54.1%)

“공직사회는 청렴합니까?”(18.0%)

-기업인(18.0%), 일반국민(18.3%), 전문가(23.7%), 공직자(70.0%)-

-‘부패했다’, 일반국민(39.1%), 공직자(1.1%)-

- 기업인 부패인식, 22.6%로 개선 추이-



- 공직자,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20.3%)

- ‘엘리트 카르텔’, ‘연줄자본주의’

출처: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청렴도 종합평가 모형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영역으로 구성”

종합 청렴도 (100점 만점)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 (40%)		청렴도 감점(최대 15%)
< 내용 > ■ 외부업무, 내부 조직운영 과정에서 체감한 부패 인식·경험 (외부: 70.4%, 내부: 29.6%) ▸ 변화하는 부패환경을 반영하고,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모형과 항목 재구성 ▸ 내·외부 :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변경(감점화)	■ 반부패 계획·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실적 평가 ▸ 기관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표	부패방지시책 효과성 평가 *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 시책 추진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평가 반영	■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으로 반영
< 방식 > 민원인·내부직원 설문	내·외부 전문가 정량·정성평가	내부직원 설문	정량평가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 추가 등급하향 가능
- 신뢰도 저해행위의 경우, 감점 외에 등급하향, 최하위등급 부여, 언론공표 가능 - 효과성 평가(설문):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신고제도 등 구성원의 효과성 평가			

청렴도 평가지표와 청렴

“확장된 부패, 청렴 개념에 맞춰 타당하게 외·내부관계자가 체감한 청렴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모형 및 항목을 체계화”

< 2025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체감도 측정항목 >

구 분	외부 체감도	내부 체감도
부패인식 (7개 지표)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 투명한 업무처리 - 기준·절차를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한 업무처리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를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
	• 공직자의 권한남용 - 부당한 청탁·알선·요구·지시·거부 등 갑질 행위 -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 추구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 공직자의 권한남용 - 부당한 청탁·알선·요구·지시·거부 등 갑질 행위 -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경험 (각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청렴의무 위반 - 조직내부 구성원 간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관점’
‘부서/지사장’
‘효능감’

※ 부패인식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100점 만점)하고, 부패경험 항목의 결과는 부패인식 항목 결과에 감점

-출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노력도 추진지표

- 취약분야 개선과 이에 대한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노력, 시책 효과성 평가가 핵심-

평가항목			26년 세부지표		지표	공직
추진기반 마련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10점)		① 반부패추진계획수립		정량	4점
			② 추진계획 공유 및 이행점검 회의 운영		정량	6점
	2. 기관장(고위직 포함) 관심과 노력도(10점)		① 청렴리더십 노력 및 대표사례		정성	10점
이행실적	3. 청렴문화 확산 (12점)	(직원 청렴교육)	①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율		정량	12점
	4. 부패통제 강화(6점)	(행동강령)	① 공직자 행동강령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적		정량	3.6점
		(이해충돌)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조사실적		정량	2.4점
	5. 부패유발 요인 해소 (12점)	(제도개선)	① 부패방지제도개선 권고이행률 및 조치기한 준수율		정량	12점
	6. 부패예방제도 운영 (10점)	(공공재정)	① 공공재정집행 자체점검 실적		정량	7점
			④ 공정채용 전문교육 이수 실적		정량	3점
	7. 반부패 협력 강화(5점)	(청렴시민감사관)	①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실적		정량	5점
추진성과	8. 반부패 추진성과 및 효과(25점)		① 핵심추진과제이행성과(신규)		정성	7.5점
			② 부패취약분야개선 우수사례		정성	17.5점
	9. 시책 효과성 평가(10점)		① 시책 효과성평가		정성	10점
가점	10. 가점(+1점)		①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정량	해당기관 (+1)
			② 멘토기관 노력도		정성	
합계						100점

-출처: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우수기관 특성”

“관심과 참여”, “청렴 효능감”





2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이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제도 운영현황-

“효능감, 체감하는 청렴”

‘청렴윤리자격증’

“청렴윤리경영시스템 구축·운영 자체가 마치
청렴윤리자격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

비윤리적 행동,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청렴윤리경영시스템이 구성원들 자신도 모르게 이 시스템에 의해 자신들의 청렴윤리적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착각하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출처: 민재형(2022), “원칙은 왜 흔들리는가”

부패방지시스템, 윤리경영시스템 등 인증

-ISO37001, CP, 인권영향평가,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등-

“효과성, 체감하는 청렴윤리”

-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효과적인가?”-
- 시스템 중심 인증평가에서 체감도, 효과성 중심으로



청렴시민감사관제도

“공공기관의 반부패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하여
감사·조사 및 평가 활동을 위해 외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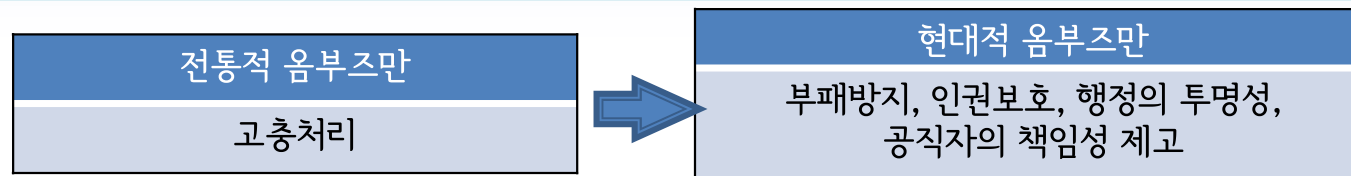
■ 청렴시민감사관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사·조사 및 평가 역할을 수행, 이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독립적 지위의 외부 부패 통제인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09. 12월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에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면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 3월부터 청렴옴부즈만에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

청렴 : 부패방지(예방기능), 시민 : 참여 및 민·관 협력, 감사관 : 감사기능(통제기능)

- 공공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독립성) 있는 외부전문가(전문성)로서, 공공기관의 행정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과 권고(간접강제성, 권고성) 등을 한다는 점에서 옴부즈만의 성격



청렴시민감사관과 옴부즈만

구 분	옴부즈만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성 격	국민의 대리인	국민의 대리인
목 적	시민의 고충해결	공공분야에서 전문성 및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감시·조사 등의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등 부패방지 및 청렴관련 활동에 중점을 두어 활동
지 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지위	좌 동
역 할	시정요구 및 권고	좌 동

※ 부패방지 활동 : 부패신고, 공익신고, 행동강령 감시 등 반부패 및 청렴 관련 제반 활동 (통상 반부패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 참고: 옴부즈만(Ombudsman)

-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또는 후견인 등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함으로써 시민권리를 구제하는 제도
- 1809년에 스웨덴에서 처음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핀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여 실시
- 각 국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
 - 스웨덴이나 필리핀 : 특별검사 또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관의 역할을 부여, → 프랑스 : ‘조정관’이란 명칭을 사용
 -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 행정정보의 공개여부의 결정을 주업무, 현대에는 옴부즈만제도가 국가는 물론이고 각 국가의 자치단체까지 확산
 - 행정의 영역의 확장에 따라 시민권익의 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외부통제의 보완 필요성

※ 옴부즈만제는 부패방지 시민감사와 시민참여의 수단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운영 가이드라인, 2014
박인규(2012), 지방자치단체 시민참여감사제도 비교분석 연구

청렴시민감사관제도 필요성

➤ 외부통제 기능 강화의 필요성

- 공공행정의 권한 강화와 행정의 복잡 다양성 및 전문화 경향으로 행정 재량권이 확대, 이로 인한 국민 권익침해 및 부패유발 가능성이 증대, 확대
- 공공기관의 자체 감찰기능 형식화, 부패방지 및 비리근절의 한계 표출 등으로 외부 통제 기능 강화의 필요성 제기
- 현대적 추세는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OECD, 2005), 외부통제 강화 흐름은 오부즈만의 기능이 전통적인 고충 등의 민원 조사·처리에서 **부패방지, 인권보호, 행동(윤리)강령 감시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

➤ 자체감사제도의 한계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 존재

- 자체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문제, 전문성 미흡으로 정책 및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 평가 보다는 **법규 중심의 감사에 치중 경향**
- **온정주의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려움**

자체(내부)감사	청렴시민감사관
· 기관 내부적 시각 · 사후적 · 개개인의 비리 적발에 중점 · 법규에 의한 판단	· 기관 외부적 시각(제3자적) · 사전적(예방적) · 비리 적발, 제도 개선 건의·제안 ·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 가능(합목적성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책무는?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혈연·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상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당 기관이나 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직무 수행과 관련한 활동 경비 외에 유관 용역 수행 등 부적절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의심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활동 내용은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각종 부정, 비리 등 부패행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창의적으로 활동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현황

“청렴시민감사관 임기 및 연임여부”

-기관업무 특성, 운영 효율성 감안-

“효과적인 청렴시민감사관 임기는?”

○ 제도 운영의 효율성, 연속성, 전문성을 감안, 기관 자율적으로 운영

☞ 2년이 87.7%(551/628개 기관), 1년이 8.6%(54/628개 기관), 3년이 2.5%(16/628개 기관)

☞ 4년이 3개기관, ‘제한 없음’ 4개 기관

○ 임기의 연임 여부 및 횟수

☞ 연임가능 53.0%(333/628개 기관), 연임불가 22.5%(141개 기관), 제한 없는 경우 24.5%(154개)

<연임 여부 및 횟수>

구분	중앙	광역	기초	교육	공직	대학	의료	계	비율(%)
연임가능	27	15	4	17	254	5	11	333	53.0
연임불가	2	1	116	0	21	0	1	141	22.5
제한없음	16	1	29	0	104	3	1	154	24.5
합계	45	17	149	17	379	8	13	628	100.0

현황자료: 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청렴시민감사관 정책간담회), 2023.12)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현황

“적정규모와 선임방식”

-기관업무 특성, 운영 효율성 감안-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규모는 몇 명이 적당한가?”

○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 특성을 감안 대표 1인을 포함하여 3~5명 내외로 구성

☞ 5명 이하가 64.0%(402/628개 기관), 10명 기관도 존재

“청렴시민감사관은 어떤 방식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

○ 기관 특성, 효율성 감안, ‘지정선임’, ‘공개 모집’, 전문기관으로 부터 ‘추천(의뢰)’ 받아 선임

☞ ‘지정선임’ 43.5%(273/628개 기관), ‘공개모집’이 26.1%(164/628개 기관), ‘추천’ 18.2%(114개)

☞ 공개모집과 추천 또는 지정선임 혼용(62개기관), 지정선임 추천 혼용(15개 기관)

⇒ ‘지정선임’, ‘추천’을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풀(Pool) 확보

⇒기관에 필요한 전문 청렴시민감사관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개모집(공고) 고민 필요

현황자료: 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청렴시민감사관 정책간담회), 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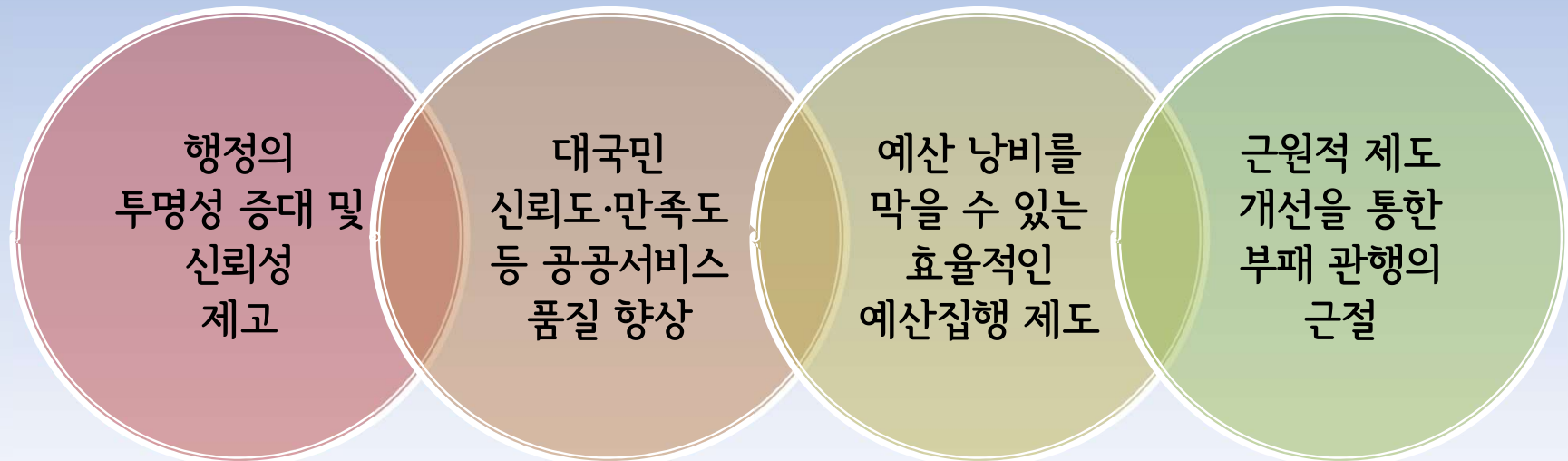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방식

- ① **개별 조사 방식** : 청렴시민감사관 1인이 특정 사안이나 사업에 대하여 개별적·수시적으로 감시·조사·평가하는 방식
- ② **회의 방식(전체회의, 수시회의 등)** : 개별 조사 방식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직무 대상 사업·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통하여 심의·의결하는 방식 ※ 개별 조사와 회의 방식은 혼합·병행할 수 있음
- ③ **현장 확인 방식** : 서면 중심의 개별·회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 상담·확인하는 방식
- ④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관계부서 간 상호 이해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기관장, 해당 부서, 지원 부서 등으로 구성되며, 연 1~2회 또는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개최하는 회의
- ⑤ **상설기구 설치 운영**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2014

청렴시민감사제도의 기대효과

“기관 내부 부패방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 확보”



부정부패를 감시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요구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 장치

<운영 사례>

○○○○년 ○월 ○○기관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은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활동 중 당초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공법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임의로 변경되어 시공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
감사 결과, 기본설계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 누락, 공법 변경을 위한 실시 설계보고서 허위 작성 등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공사 관계자를 교체하고 **공사비 357백만원을 회수함**

제3자적 입장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요구와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기에 기관 내부의 관행화된 부패 근절에 기여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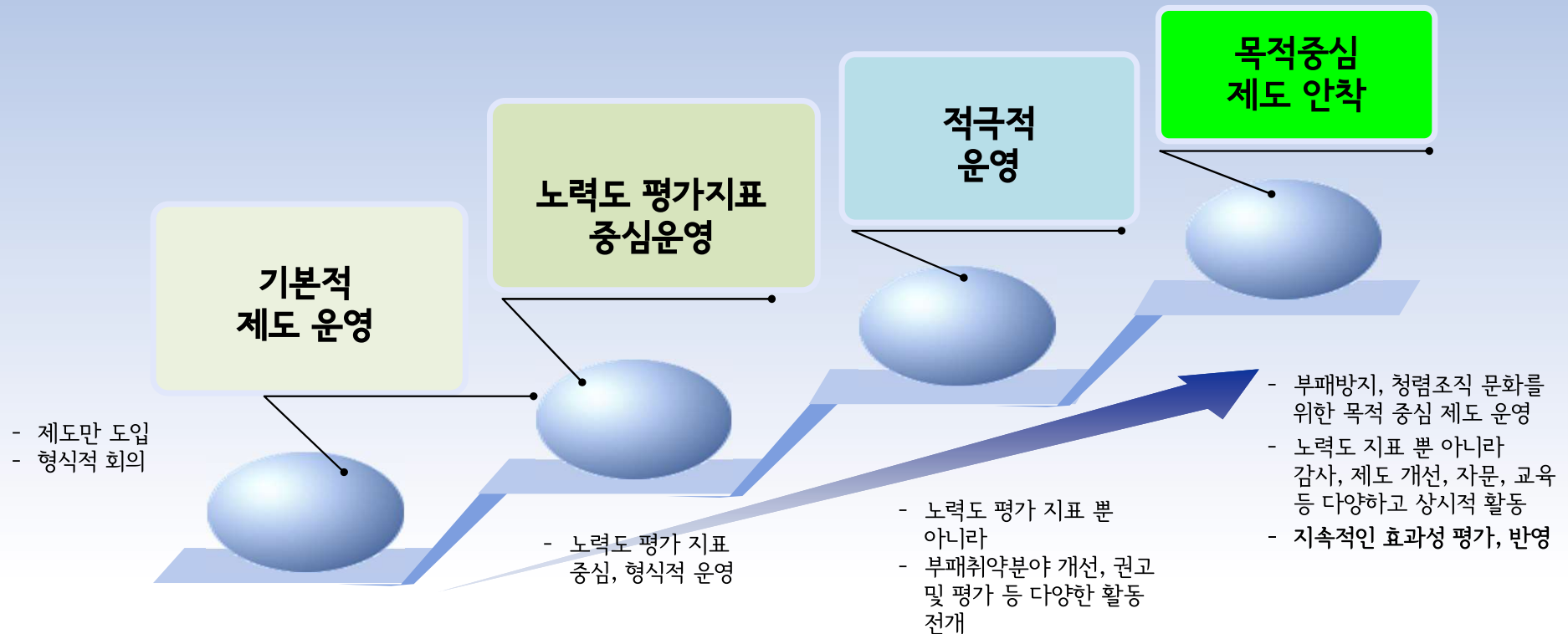
3

“청렴시민감사관 활용법”

-목적중심의 효과성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목적중심의 효과성 있는 제도 운영

‘우리 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운영 수준은?’



“평가지표에 따른 운영”

“평가지표는 최소한 기준, 어떻게 활용·효과성 제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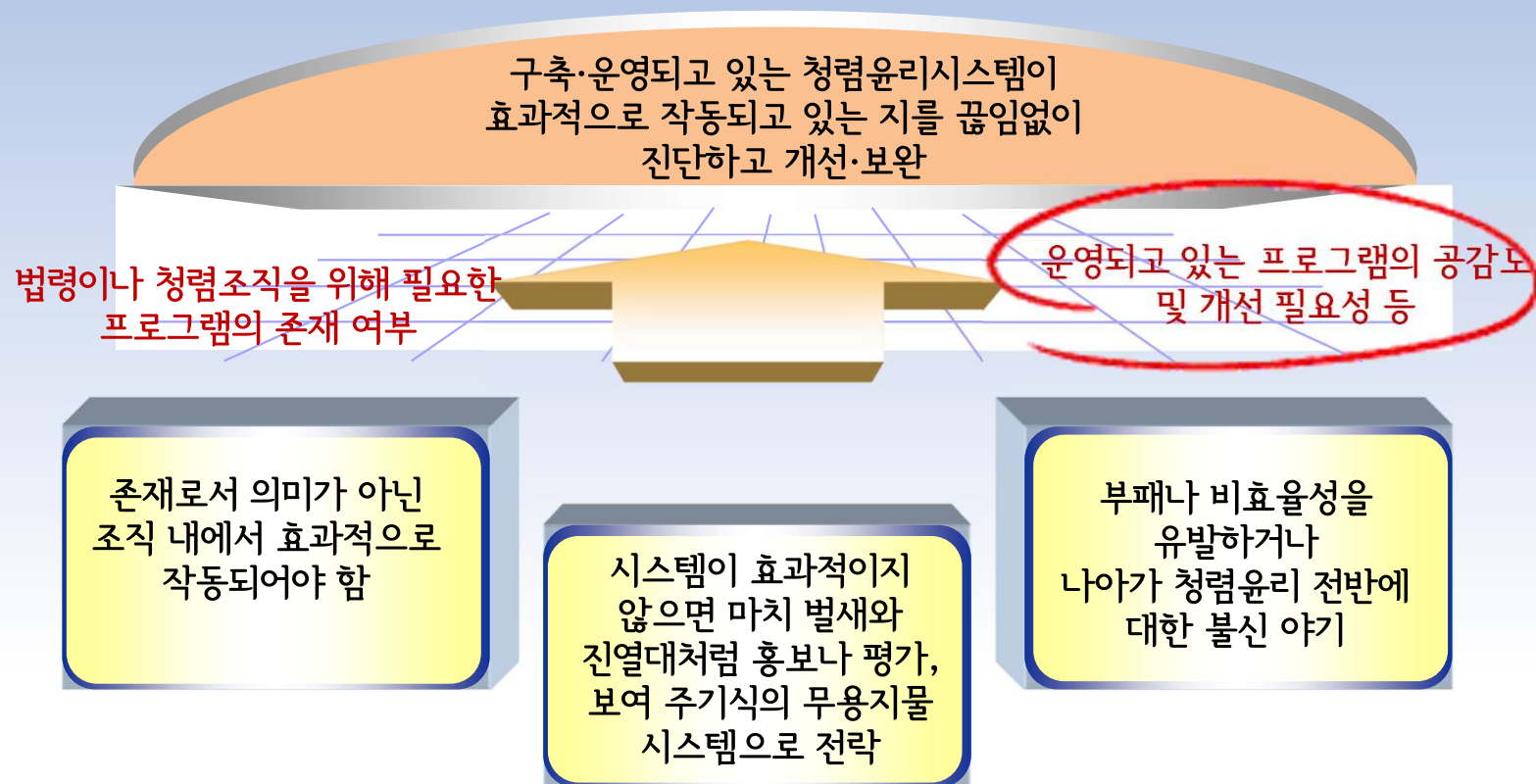
2022년(7점)	2023년(8점)	2026년(5점), 2025년(8점)
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50점, 정량) -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이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통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 (1) 권고에 대한 수용 건수 :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또는 서면의견으로써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사례 1건당 4점 (2) 권고에 대한 조치 완료 건수 : 제도개선 또는 감사 권고를 기관이 수용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사례 1건당 3점 (3) 타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의 교류활동 횟수 :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사례 1건당 1.5점 (4) 청렴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기본 3점, 실시 7.5점 ②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50점, 정성) A)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안 사항 반영 여부(25점) (B) '청렴사회협약'의 지속적 이행(25점)	① 타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의 교류활동 횟수 :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사례 1회당 20점(최대 2회) ※ 비대면 온라인 교류활동도 실적으로 인정 ※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1명 이상 참석하면 인정 ※ 국민권익위 주관 워크숍 참석 실적도 인정(1회만 인정) ② 권고에 대한 조치 완료 건수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또는 서면의견으로써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하여 완료한 경우, 사례 1건당 30점(최대 2건)	① 타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의 교류활동 횟수 :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 국민권익위 주관 워크숍 참석 실적도 인정(1회만 인정) ※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지역 청렴클러스터 등 기관간 정기적 협의회 참석도 인정 ② 권고에 대한 수용 건수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또는 서면의견으로써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사례 1건당 15점(최대 2건) ③ 권고에 대한 조치완료 건수 :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조치를 완료한 경우
	2024년(7점)	
	① 타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의 교류활동 횟수 : 2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사례 1회당 20점(최대 2회) ※ 비대면 온라인 교류활동도 실적으로 인정 ※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1명 이상 참석하면 인정 ※ 국민권익위 주관 워크숍 참석 실적도 인정(1회만 인정) ※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지역 청렴클러스터 등 기관간 정기적 협의회 참석 인정 ② 권고에 대한 수용 건수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또는 서면의견으로써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사례 1건당 30점(최대 2건)	

(예)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실시, 추진계획 공유 및 이행점검 회의 운영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연도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제도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개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 청렴윤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 개선이 중요”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반영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K-CP, Compliance program」”

핵심요소	세부
① 윤리의식 확립	-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모든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숙지 - 윤리위반 행위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통해 윤리문화 확립 - 윤리경영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② 관리체	K-CP : 국제 반부패 규범에 부합하는 CP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부패 리스크를 예방·탐지·개선할 수 있는 지침
③ 윤리위	환경조성 리더십 CP전담조직 정책 및 절차 대내·외 소통
④ 윤리위	부패 리스크 매핑 부패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부패 리스크 맵 구축 및 공개
⑤ 내·외부	부패 리스크 예방·관리 부패 리스크 예방 부패 리스크 탐지 및 관리
⑥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모니터링·개선 모니터링 개선 제재·인센티브 제재 인센티브 서비스 대상자, 규제기관, 외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관계자와 윤리경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외부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분리된 의사소통 채널 구축 → 임직원과 직접적인 의사소통 -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윤리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는지 판단하여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 기관별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보완·강화하여 기관 상황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구성요소

가치공유 - 청렴윤리방침(윤리헌장), 청렴윤리 목적 및 목표
-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과 출선수범
- 임직원의 청렴윤리에 대한 공감

조직화 - 청렴윤리전담부서 및 직원 운영 실태
(행동강령책임관, 청탁방지담당관 등)
- 청렴윤리위원회, 청탁방지위원회 등 설치 운영
- 청렴윤리부조만(청렴시민감사관), 청렴리더(청렴추진단) 등

문서화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정, 운영
- 청렴윤리관련 사례집, 해설서 제작, 배부
- 청렴윤리관련 제 규정 및 지침, 매뉴얼 운영
(징계규정, 퇴직자윤리강령 등)

제도화 - 행동강령 위반 상담센터 운영
- 평가시스템 운영 (청렴도평가, 윤리지수 평가, 청렴문화지수 평가, 고위직 위험도 평가 등)
- 보상시스템 운영 (청렴마일리지제도, 인센티브, 신고자 보상제도 등)
- 공개제도 운영 (수익계약, 업무추진비, 규정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반영”

패행위/공
를 마련하도록 함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운영

“누구를 선임·구성할 것인가?”

-기관업무 특성, 다양한 전문성, 운영 효율성 감안-

“청렴시민감사관 자격(例)”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기관 업무특성 반영)
-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자로서 전문성 및 청렴성이 높은 자
-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기관 특성과 반부패·청렴윤리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시민
-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별도의 위촉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기관특성 반영, 역할 분야 중심 구성 필요

(예) 반부패청렴정책(청렴윤리전문가), 갑질·인권(노무사), 법률(변호사), 감사 전문가,
기관업무특성(발전설비, 건설, 해양, 보건, 의료, 금융, 노무 등)

구성·운영 사례

<방위사업법 제 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 2024. 4. 30., 2025. 12. 23.>
-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2024. 4. 30., 2025. 12. 23.>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 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밝혀지거나 법 제6조제9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윤리경영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기준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률, 조례, 사규 등 근거로 설치, 운영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2014

청렴시민감사관 활용직무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기관 반부패·청렴관련 자문**,
감사 참여 및 제도개선 권고, 반부패·청렴 교육, 평가 참여 등 다양”

청렴시민감사관 대표적 직무	활동 직무
① 주요 공공사업(계약 등) 및 부패 취약분야 감사·조사 및 평가 ②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 ③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사후관리) ④ 부패방지(예방)·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⑤ 부패 예방 교육(행동강령 등) ⑥ 감사 요구참여(감사 동행 등) ⑦ 모니터링(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 ⑧ 그 외 청렴 문화 확산 활동 등	① 교육 및 워크숍 ② 모니터링·참관 활동 ③ 입찰 및 채용 평가위원 ④ 기관 청렴시책 의견제시 및 의결 참여 ⑤ 제도개선 권고 ⑥ 현장점검 ⑦ 부패영향평가 ⑧ 감사요구 및 감사참여 ⑨ 감사품질평가 ⑩ 사업소 평가, 공모전 심사·선정 ⑪ (청렴)윤리경영위원회 참여 ⑫ 보고서(백서) 발간 ⑬ 핫라인, 신고제도, 민원접수 ⑭ 계약 및 민원 서류 검토 ⑮ 노조면담 및 권익위 권고사항 논의 ⑯ 징계(인사)위원회 참여 ⑰ 임직원 인터뷰, 의견청취, 소통창구

※기관 특성 및 현황 감안
기관맞춤형 운영 필요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2014
2021년,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역할(1): “기관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제시”

“청렴시민감사관의 중요한 핵심 역할(직무)” -상시적 소통, 제언-

- 기관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 기관 맞춤형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에 조언
 -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
 - 실행,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
- 부패(청렴)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반영 등
 - 직원 대상 심층 인터뷰 FGI 실시
 - 효과성 있는 청렴 시책 운영 방안 조언 등
- 전사적 청렴 추진을 위한 청렴실무추진단 운영 등 제언
 - 워크숍, 교육, 이행추진 사항에 대한 조언 등

역할(2): “부패영향평가”

“법령,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신호등 효과 & 시골신호등 효과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부패방지권익위법(제28조)]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공개성
	특혜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재정누수 가능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부패영향평가 평가와 제도개선 권고”

부서, 업무단위에서 청렴윤리취약분야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

“개선의 핵심은 제도화(규정)”

검토 및 자문의견
“연구개발 업무기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와 평가기준

가.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보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입니다.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는 사규·정관 등 사내 규정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 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07.12.28. 도입,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나. 부패영향평가의 목적은 1) 법령 등의 불확정 개선,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준수부담의 합리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지,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실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준수부담의 합리성	규정상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 내부규정 적용대상 집단이 부담하는 비용책성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

○ 현황 및 문제점

- 동 개정(안),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8호, 2024. 12. 30)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건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고 규정” 동 조 제⑥항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고 규정

○ 검토의견

- 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50호 「기술로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및 기후에너지부는 “기술로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건임

- 동 개정(안) ‘기술로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이 개정되는 경우, 해당 개정 고시 기준으로 적용함을 규정하여 기술로 징수 시점 적용을 명확히 함은 바람직하다 사료됨

- 부패영향평가 기준, ‘준수부담의 합리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동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사료됨. 다만 동 개정(안)에 규정된 기술로 징수 상한 기준을 반영한 해당기업별에 적용하는 세부판단기준(또는 평가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재량규정의 명확화 및 투명성을 확보함도 필요하다 사료됨

발신일: 2025년 06월 17일

발신처: 산업통상자원부

수신처: 연구개발업무기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제 목 : “연구개발 업무기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검토 의견

1. 귀 사(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구개발업무기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요청(2026.06.10) 관련 사항입니다.

3. 위와 관련, 동 부패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별첨과 같이 송부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의견서(시정·개선 권고)

신청인	000 청렴시민감사관
사정·개선 제목	계약서 작성의 생략기준 및 생략 대체 서류·증빙 명확화로 예측가능성 확보와 부패취약분야 개선
사정·개선 세부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중앙회는 「계약예규」 제63조(계약서 작성의 생략)제①항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5. 물품납품과 동시에 물품대금 지급조건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서 정한 경우 외의 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로 규정 ○ 「계약예규」 제63조(계약서 작성의 생략)제②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 이거나 계약 성격상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청구서, 각서, 협정서, 송낙서 등 계약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현장에서 혼선 존재로 민원인 불만 야기와 업무효율이 떨어짐 - 청구서, 송낙서, 협정서 등 다양한 형태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기준 또한 불명확하여 자의적·관행적으로 처리할 개연성 존재 -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 및 부패취약분야 발굴을 위한 인식조사”(2025.5)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소극행정’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기관 차원 뿐 아니라 부서/업무단위에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를 통해 청렴노력도 평가지표(제도개선 권고 등) 실효성 제고

역할(3): “기관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을 활용한 기관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기관의 교육 니즈 분석(임직원 심층 면담, 설문조사 등) 및 문제점 도출 반영, 맞춤형 교육(효과성 제고)-

- 청렴도 개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고위직 청렴 리더십 교육
(전사적 청렴 추진을 위한 고위직, 부서장의 역할과 실천 등)
- 청렴취약업무 및 청렴업무담당자(청렴리더 등) 청렴 교육
(취약요인 및 개선 방안 등 제시, 실천 방안 등)
-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하는 청렴소통교육(청렴을 묻고 답하다 등)**
- 계약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청렴교육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고위직, 승진자 및 신규자)
- 자기주도식, 참여식 청렴윤리 교육(효과적인 통합교육)



역할(4): “민원, 공사 현장 등 부패(청렴)취약분야 방문, 시정”

□ 부패취약분야 선정 및 검토 활동

- 청렴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주요핵심사업 중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업에 대하여 토론 및 선정
- 1억이상 사업 중 문제 또는 예방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
 - 바다의 해파리 폴립 제거 사업
 - 선박 건조사업, 지사 건립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 등
- 청렴시민감사관은 일일이 검토하여 의견 제시

※ 의견제시 시 반드시 “청렴시민감사관 권고 보고서” 양식에 의거 세부적으로 작성, 제시하며, 이에 대한 시정 및 결과보고서를 공문으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

□ 민원 현장 시찰 활동

- 공사,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에 대한 현장 방문
- 현장에서의 문제점 지적, 시정 요구
- 홈 페이지 민원센터를 통해 제기된 민원과 답변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출처: 해양환경공단 등 활동 보고

역할(5): “고위직협의체, 윤리경영위원회 등 위원회 참여”

- 고위직 청렴협의체 참여로 효과성 제고
 - 기관단위 반부패·청렴 추진을 위한 고위직협의체 외부위원으로 참여
 -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
 -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인사(징계)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등 참여
 - 징계심의위원회, 인권 및 윤리경영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현장에서의 문제점 지적, 시정 요구
- 용역평가, 채용 면접 등 참여
 - 평가위원 뿐 아니라 평가위원회 참관 모니터링





“맏음말”

-함께하는 청렴윤리-

“효과적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목적중심의 제도 운영 -끊임 없는 질문-

기관/
업무담당자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
- 현장과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능, 역할 중심 구성·운영
 - 다양한 역할 부여와 적극적인 활용, 동기부여
 - 부서, 업무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청렴
시민감사관

-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책임감”
- 다양한 전문성 활용과 역량 강화
 - 도움되는 적극적인 활동
 - 상시적인 소통(회의때만이 아닌)

啐啄同時

“관심과, 참여, 효과적인 시스템”



A green plant branch with several leaves and small buds is positioned diagonally across the frame. It appears to be floating on a blue surface, which is covered in concentric white ripples, suggesting a recent splash or drop of water. The background is a solid, vibrant blue.

-여러분을 응원합니다-